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-456호 (2026. 2. 12.)로 지정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13일
 중랑구청장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- 모아타운 추진 지역(2개소)
 - 지정기간 : 2026년 2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
 - 지정범위 : 모아타운 사업구역(121,103.22㎡) 내 지목 '도로' 한정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서울특별시	중랑구	면목동 127-26 일대	21,829.1	모아타운
	중랑구	면목동 377-4 일대	22,041.87	

※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(5년)을 감안하여 지정기간 설정

2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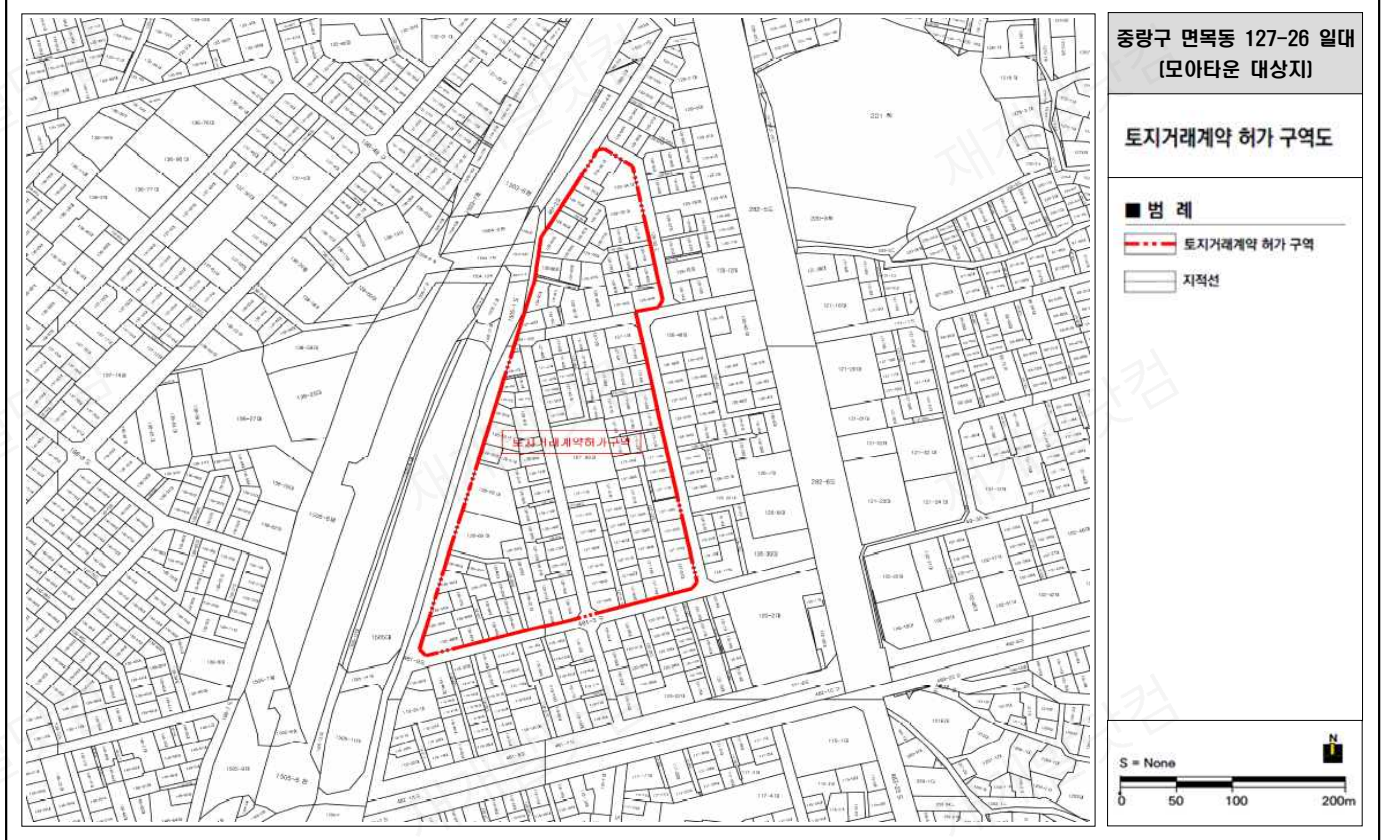
3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확인*

* 기타정보-토지거래허가-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시)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4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
1. 중랑구 면목동 127-26 일대



2. 중랑구 면목동 377-4 일대

